

선	기 관 의 장
람	



제823호 2014. 07. 04. (금)

고 시

- 삼척시고시 제2014-8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_____ 2
- 삼척시고시 제2014-88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_____ 3
- 삼척시고시 제2014-89호 도로명 폐지 고시 _____ 4

공 고

- 삼척시공고 제2014-435호 도로의 지정(변경) 공고 _____ 5
- 삼척시공고 제2014-436호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_____ 6
- 삼척시공고 제2014-438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_____ 19
- 삼척시공고 제2014-439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_____ 24
- 삼척시공고 제2014-440호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2
- 삼척시공고 제2014-442호 제17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_____ 52

공									
람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고시 제2014-8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의거 우리시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7. 04.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새주소)	고시일	부여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한소리 116-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용소길 163	20140704	건물 신축	20090626	지역지명,지형지물(용소)명칭활용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249-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851	20140704	건물 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 활용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디자인과(☎570-394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07.0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삼척시고시 제2014-88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의거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한 건물의 번호 변경 등에 따른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7. 04.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변경:

순번	변경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		변경후 도로명주소	비고
		변경일	변경사유		
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산양서원1길 86-15	20140704	출입구변경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산양서원1길 102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디자인과(☎570-394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07.0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삼척시고시 제2014-8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의거 우리시 건물별실 등에 따른 폐지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7. 04.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폐지:

순번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비고
1	강원도 삼척시 봉황마을2길 11	20140704	건물 철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디자인과(☎570-394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등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삼척시공고 제2014-435호

도로의 지정(변경)공고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537-3번지 상에 단독주택 용도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 신고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2014년 07월 02일

삼척시장

- 도로의 위치 :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537-6번지의 1필지
- 도로의 현황 : 길이 : 62.14m, 너비 : 6.0m, 면적 : 443.0m²
-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공부상 면적	지분 소유권	계외 면적	지정 면적	
합계			3,891			변경:443 당초:466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537-6 당초:537-3	전	3,636	1,212	변경:793 당초:770	변경:419(공유) 당초:442(공유)	김선기
				1,212	변경:793 당초:770	변경:419(공유) 당초:442(공유)	김준기
				1,212	변경:793 당초:770	변경:419(공유) 당초:442(공유)	하태영
537-1	답	255	-	231	24	진만열	

- 관계서류(도서는) 삼척시 미로면사무소 개발부서에 비치하였으며,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도로지정과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삼척시 미로면사무소 개발부서 (☎033-570-49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공고 제2014-436호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7월 2일
삼척시장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3.12.31일한 한시기구인 『전략산업국』 존속기간 만료 및 『산업개발국』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업개발국에 산업개발과, 에너지산업과, 관광지역개발과, 특화산업과를 둔다
- 지식개발과, 정보자원정책과, 기업투자지원과, 축산과, 지역개발사업단 폐지
- 관광지역개발과, 대이동물관리소, 해양관광시설관리소 신설
- 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문화시설관리소를 문화예술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전화 570-3233, 팩스 570-3133)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총무과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략산업국, 안전행정국”을 “산업개발국, 자치행정국”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전략산업국에 두는 과)”를 “(산업개발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업개발국에 산업개발과, 에너지산업과, 탄광지역개발과, 특화산업과를 둔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산업국”을 “산업개발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미래산업 육성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방제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사항
- 4. 태양광발전 테마파크 추진
- 5.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유치
- 6. 친환경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지원
- 7. LNG 제4생산기지 지원에 관한 사항
- 8. 종합발전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 9. 탄광지역개발사업 중장기 계획수립
- 10. 플라즈마 석탄가스화 발전소 유치
- 11. 경제자립형개발사업 및 지역연고산업 육성

- 12. 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타운 조성 지원
- 13. 종합메디컬 타운 조성 및 치매전문요양시설 건립
- 14. 이사부 테마파크 및 해양레포츠단지 조성
- 15. 인재육성에 관한 계획수립 및 교육경비 지원
- 16. 그 밖에 신규 시책사업 및 유치·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의 제목 “(안전행정국에 두는 과)”를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행정국에 총무과, 안전총괄과, 정보자원정책과”를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장애인복지”를 “장애인복지, 가족, 드림스타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업투자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를 “안전총괄과, 농업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6호부터 제17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기업지원, 일자리 지원,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6. 자연재해·풍수해 관련 재난관리, 방제업무 총괄
- 7. 인적·사회적 재난관리 총괄 및 민방위에 관한사항
- 8.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추진 및 소득증대에 관한사항
- 9. 친환경농업 육성 및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추진에 관한 사항
- 10.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
- 11. 도로, 교량,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2. 하천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 13.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4. 도시개발, 경관조성 등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15.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및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 16.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건축,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17. 해양, 항만, 수산, 어업진흥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제목 “문화시설관리소”를 “문화예술박물관”으로 한다.

제1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이동굴관리소

- 가. 대이동굴관리소 행정의 종합조정 및 사무에관한 사항
- 나. 환선굴, 대금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
- 다. 대이리군립공원지역 및 동굴·부대시설의 보호 유지관리
- 라. 관광객 유치 및 안내
- 마. 기타 관리소 시설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양관광시설관리소

- 가. 해양레일바이크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해신당공원, 황영조기념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장미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래전략산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산업개발국”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추진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삼척시 지역발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전략산업국장”을 “산업개발국장”으로 하며, “지역개발사업단장”을 “관광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②삼척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2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 제5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⑤삼척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⑧삼척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삼척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⑩삼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⑪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⑬삼척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⑭삼척시 시민제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⑮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⑯삼척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⑰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문화시설관리소장”을 “문화예술박물관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전략산업국, 안전행정국, 경제건설국을 둔다.	제3조(국의 설치) ----- 산업개발국, 자치행정국-----.
제4조의2(전략산업국에 두는 과) ① 전략산업국에 전략산업과, 에너지지원과, 기간산업과, 지식개발과를 둔다.	제4조의2(산업개발국에 두는 과) ① 산업개발국에 산업개발과, 에너지산업과, 탄광지역개발과, 특화산업과를 둔다.
② 전략산업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산업개발국-----.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전략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래산업 육성기본계획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세계소방 방재산업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태양광발전 테마파크 추진
5. 조선업체 유치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유치
6. 국제·강원소방학교 설치 추진에 관한 사항	6. 친환경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지원
7. LNG 제4생산기지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원에 관한 사항
8. 요트(보트)면허시험장 및 계류장 설치에 관한 사항	8. 종합발전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9. 종합발전단지 유치·지원에 관	9. 탄광지역개발사업 중장기 계획

한 사항	수립
10. 해양 심층수 개발에 관한 사항	10. 플라즈마 석탄가스화 발전소 유치
11. 첨단유리공예 특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11. 경제자립형개발사업 및 지역연고산업 육성
12. <삭제 2011.04.22.>	12. 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타운 조성 지원
13. <삭제 2011.04.22.>	13. 종합메디컬 타운 조성 및 치매전문요양시설 건립
14.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	14. 이사부 테마파크 및 해양레포츠 단지 조성
15. 그 밖에 신규 시책사업 및 유치·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5. 인재육성에 관한 계획수립 및 교육경비 지원
<신설>	16. 그 밖에 신규 시책사업 및 유치·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안전행정국에 두는 과) ① 안전행정국에 총무과, 안전총괄과, 정보자원정책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를 둔다.	제5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② 안전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자치행정국장-----.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사회복지, 의료구호, 여성, 아동, 보육, 청소년, 노인,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13. ----- 장애인복지, 가족, 드림스타트--
14. ~ 16. (생략)	14. ~ 16. (현행과 같음)

- 17.(생략)
- 제6조(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① 경제건설국에 지역경제과, 기업투자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복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를 둔다.
- ② 경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추진 및 소득증대에 관한사항
 6. 친환경농업 육성 및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추진에 관한 사항
 7.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
 8. 도로, 교량,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하천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시개발, 경관조성 등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및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13.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건

- <삭제>
- 제6조(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① ----- 안전총괄과, 농업정책과-----
-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기업지원, 일자리 지원,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풍수해 관련 재난관리, 방재업무 총괄
 7. 인적·사회적 재난관리 총괄 및 민방위에 관한사항
 8.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추진 및 소득증대에 관한사항
 9. 친환경농업 육성 및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추진에 관한 사항
 10.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
 11. 도로, 교량,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하천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13.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

- 축,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4. 해양, 항만, 수산, 어업진흥에 관한 사항
 15. 자연재해·풍수해 관련 재난관리, 방재업무 총괄
- <신설>
- <신설>
- 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개발사업단
 - 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추진사항
 - 나. 폐광지역 경제진흥증장기 개발계획 수립
 - 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
 - 라.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
 - 마. 탄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 바.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승인 신청
 - 사.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 고용대책 및 보상추진
 - 아. (주)강원랜드 이사회 협력업무 등

- 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도시개발, 경관조성 등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및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16.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건축,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7. 해양, 항만, 수산, 어업진흥에 관한 사항
- 제15조(소관사무) -----
- <삭제>

2. ~ 4. (생략)

5. 문화시설관리소

- 가. (생략)
- 나. (생략)
- 다. (생략)
- 라. (생략)
- 마. (생략)

<신설>

<신설>

1. ~ 3.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4. 문화예술박물관

- 가. (현행과 같음)
- 나. (현행과 같음)
- 다. (현행과 같음)
- 라. (현행과 같음)
- 마. (현행과 같음)

5. 대이동굴관리소

가. 대이동굴관리소 행정의 종합 조정 및 사무에 관한 사항

나. 환선굴, 대금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

다. 대이리군립공원지역 및 동굴·부대시설의 보호 유지관리

라. 관광객 유치 및 안내

마. 기타 관리소 시설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해양관광시설관리소

가. 해양레일바이크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해신담공원, 황영조기념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장미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3조제2항 관련)

사업소명	위치
• 상하수도사업소	삼척시 중앙로 296
• 평생학습관	삼척시 청석로3길 16-41
• 내수면개발사업소	삼척시 근덕면 초당길 234
• 문화예술박물관	삼척시 엑스포로 45
• 대이동굴관리소	삼척시 신기면 환선로 800
• 해양관광시설관리소	삼척시 근덕면 공양왕길 2

삼척시공고 제2014-438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7월 2일
삼척시장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3.12.31일한 한시기구인 『전략산업국』의 존속기간 만료 및 『산업개발국』 신규 설치에 따른 한시기구 정원과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 인건비 정원 배정으로 총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삼척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

- 당초 총정원 844명에서 852명으로 8명 증가
(사회복지분야, 안전분야, 세무분야 등 정원 중)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전화 570-3233, 팩스 570-3133)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총무과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44명”을 “85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32명”을 “840명”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을 “정원은 별표3”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정원”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으로 한다.

별표 2 ,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 중 한시기구 “산업개발국”의 지방4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15.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으로 일반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와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삼척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844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832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852명 ----- ----- 1. ----- 840명 2. (현행과 같음)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 ----- ----- 정원은 별표3 ----- ----- -----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율	100%	0.8% 이내	6.0% 이내	24.5% 이내	29.0% 이내	29.5% 이내	9.8% 이상	0.4% 이내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계	연구관	연구사	계	지도관	지도사
비율	100%	15%이내	85%이상	100%	15%이내	85%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분	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100%	0%이내	50%이상	50%이내	0%이내	0%이내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지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852					
정무직 계	1					
일반직 계	821					
4급	4	4				
4 ~ 5급	1			1		
5급	46	23	3	2	6	12
6급 이하 소계	768					
전문경력관 소계	2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소계	1					
연구직 계	4					
연구관	0					
연구사	4					
지도직 계	25					
지도관	3			3		
지도사	22					

삼척시공고 제2014-439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7월 2일
삼척시장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3.12.31일한 한시기구인 「전략산업국」의 존속기간 만료 및 「산업개발국」 신규 설치에 따른 한시기구 정원과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 인건비 정원 배정으로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조직분야 : 행정직 증1
- 소득세 독립세 전환 : 세무직 증2
- 복지분야 증원 : 사회복지 증2 , 행정·사회복지 증4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전화 570-3233, 팩스 570-3133)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총무과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4. 1. .>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852	444	12	104	74	70	95	53
정무직	계	1	1	-	-	-	-	-	-	
	3급상당	소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821	440	12	78	73	70	95	53	
	4급	소 계	4	4	-	-	-	-	-	-
		행 정	2	2						
		행정·기술	2	2						
	4-5급	소 계	1	-	-	1	-	-	-	-
		기술·보건간호	1			1				
	5급	소 계	46	23	3	2	6	2	6	4
		행 정	11	9	1		1			
		녹 지	1	1						
		해양수산	2	1			1			
		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3	2			1			
		행정·시설	6	3			2			1
		행정·별정	1		1					
		행정·보건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2
		행정·시설·학예연구	1				1			
		행정·시설·별정	1		1					
		행정·공업·환경·환경연구	1	1						
	행정·농업·녹지·보건	1						1		

직급별		기관별	총 계							
			총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일반직	5급	행정·농업·복지·시설	6	2					4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2					1	1	
일반직	6급	소 계	187	103	3	16	15	16	26	8
		행정	56	40	2		5	3	6	
		공업	1				1			
		농업	3	3						
		복지	4	4						
		해양수산	3	3						
		보건	1			1				
		보건진료	6			6				
		시설	14	8			3	2	1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10	7				2	1	
		행정·사회복지	12	5				2	1	4
		행정·전산	1	1						
		행정·공업	5	4			1			
		행정·농업	24	3				5	12	4
		행정·복지	2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17	8			2	2	5	
		공업·환경	1				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농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윤 전	3	2	1					
건축기계·열관리운영	1				1					
전기통신·전화상담운영	1	1								
시설관리·사무운영	2	2								

직급별		기관별	총 계							
			총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일반직	7급	소 계	229	130	3	27	21	16	23	9
		행정	71	47	3		9	3	2	7
		세무	5	5						
		전산	2	2						
		사회복지	13	5				4	2	2
		사서	1					1		
		공업	7	5			2			
		농업	12	4				1	7	
		복지	3	3						
		해양수산	7	6			1			
		보건	7			7				
		의료기술	5			5				
		간호	6			6				
		환경	4	4						
		시설	24	17			1	2	4	
		방송통신	2	2						
		행정·세무	9	4				1	4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3	1					2	
		행정·시설	4	2					2	
		공업·보건	1				1			
		농업·수의	1	1						
		보건·간호	5			5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농업·환경	2	2						
		행정·농업·복지·시설	2					2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4	2		0	1	1				
열관리운영	2	2								
윤 전	10	7		3						
선박항해운영	0	0								

직급별		기관별	총 계								
			총 계	본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일반직	7급	농림운영	1	1		0					
		간호조무	1			1					
		시설관리	5	2			3				
일반직	8급	소 계	231	121	3	25	20	22	23	17	
		행정	77	48	1		6	6	6	10	
		세무	8	8							
		전산	1	1							
		사회복지	10	3					1	6	
		사서	2				2				
		공업	3	1			2				
		농업	4	4							
		농지	5	5							
		해양수산	1	1							
		보건	7			7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8			8					
		간호	4			4					
		환경	4	4							
		시설	15	6			3	2	4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8	6					2		
		행정전산	2	1				1			
		행정사회복지	4	4							
		행정환경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시설	6	3			2			1	
		보건간호	3			3					
		보건환경	1	1							
		시설농업공업	3	3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농지시설	1					1			
건축운영	2				2						
통신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1	1									

직급별		기관별	총 계							
			총 계	본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일반직	8급	전기운영	4	2			2			
		기계운영	8	2			1	3	2	
		열관리운영	1				1			
		운전	17	5		1		4	7	
		농림운영	0	0						
		사무운영	2	2						
		시설관리	9	6	2		1			
		화공기계운영	1	1						
		시설관리·농림운영	2	-		1	-	1		
		소 계	121	58	-	7	10	14	17	15
일반직	9급	행정	37	18			2	2	4	11
		세무	1	1						
		전산	2	2						
		사회복지	16	8					4	4
		사서	1					1		
		공업	-							
		농업	5	3						2
		농지	2	2						
		해양수산	2	1					1	
		보건	-							
		의료기술	1			1				
		환경	2	2						
		시설	13	11			1	1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2						1	1
		행정사회복지	1	1						
		사회복지·환경	1						1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농업농지시설	3				1	1	1	1
		건축운영	-							
통신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3						2	1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분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일반직	9급	운 전	7			2	1	1	3	
		사무운영	6	5			1			
		시설관리	6			2	3	1		
		방 호	2			1				1
		전기기계운영	2	1			1			
	전문 경력관 (나군)	소 계	2	1	-	-	1	-	-	-
		공연기획홍보원	1				1			
예비군중대장		1	1							
별정직	계	1	1	-	-	-	-	-	-	
	6급	소 계	1	1	-	-	-	-	-	
		수행비서	1	1						
연구직	계	4	2	-	1	1	-	-	-	
	연구사	소 계	4	2	-	1	1	-	-	
		확에연구사	2	1			1			
		기록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1			1				
지도직	계	25	-	-	25	-	-	-	-	
	지도관	소 계	3			3				
		농촌지도관	3			3				
	지도사	소 계	22			22				
		농촌지도사	22			22				

삼척시공고 제2014-440호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7월 2일
삼척시장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3.12.31일한 한시기구인 「전략산업국」의 존속기간 만료 및 「산업개발국」 신규 설치 등에 따른 소속 부서장의 직급과 직렬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산업개발국장 ⇒ 지방서기관
- 나. 산업개발국의 소속 부서장
 - 산업개발과장, 에너지산업과장, 특화산업과 ⇒ 지방행정사무관
 - 관광지역개발과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다. 사업소장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 문화예술박물관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확에연구관
 - 데이동굴관리소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해양관광시설관리소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전화 570-3233, 팩스 570-3133)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총무과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전략산업국)”을 “(산업개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산업개발과장·에너지산업과장, 특화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탄광지역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의 제목 “(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정보자원정책과장·세무과장·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를 “자치행정과장·세무과장·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를 “주민생활지원과장·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한다.

제5조제2항 중 “기업투자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복지과장은 지방복지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를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복지과장은 지방복지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로 한다.

제13조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하고 대이동굴관리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로 “문화시설관리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를 “문화예술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로 “지역개발사업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를 “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7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삼척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전략산업국장”을 “산업개발국장”으로 하고,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전략산업과장, 총무과장”을 “산업개발과장, 자치행정 과장”으로 한다.

②삼척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5호 중 “문화시설관리소”를 “문화예술박물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7조 제5항 제1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락반: 총무과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③삼척시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3항 중 “(정) 안전행정국장 (부) 총무과장”을 “(정) 자치행정국장 (부)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삼척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⑤삼척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총무사회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1조 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⑦삼척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⑧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삼척시 재해대책본부 설치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⑩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중 “도시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도시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⑪삼척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총무과장, 정보자원정책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⑫삼척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⑬삼척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⑭삼척시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⑮삼척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⑯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문화시설관리소장”을 “문화예술박물관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전략산업국) ① (생략)	제3조의2(산업개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략산업과장·에너지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기간산업과장·지식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산업개발과장·에너지산업과장·특화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탄광지역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안전행정국) ① (생략)	제4조(자치행정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총무과장·정보자원정책과장·세무과장·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관광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세무과장·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 ----- ----- ----- ----- ----- ----- ----- ----- -----
제5조(경제건설국) ① (생략)	제5조(경제건설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② -----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업투자
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
업정책과장·축산과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복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
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
로,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
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
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
방시설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사업소장의 직급) 상하수도사
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
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내수면개
발사업소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으로, 문화시설관리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
학예연구관으로, 평생학습관장은 지
방행정사무관으로, 지역개발사업단
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
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안전총괄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
시설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
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으로, 산림복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
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
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제13조(사업소장의 직급) 상하수도사
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
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하고, 대이동물관리소장은 지방행
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박물관장---
----- 해양관광시설관리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
농업사무관-----.

[별표 1]

읍·면·동장의 직급 (제15조 관련)

기관별	직위	직급
도계읍사무소	도계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원덕읍사무소	원덕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근덕면사무소	근덕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하장면사무소	하장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노곡면사무소	노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미로면사무소	미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곡면사무소	가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기면사무소	신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양동주민센터	남양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성내동주민센터	성내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교동주민센터	교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정라동주민센터	정라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3]

본청 실·과장 사무분장표(제6조 관련)

구분	분장사무
기획감사실	1.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3. 시정주요업무 및 심사평가 시행계획 수립 4.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5. 시정발전위원회 운영 6. 중앙 및 도정 주요업무심사평가 7. 광역권 행정 운영관리 8.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 9. 종합월동대책 시달 10. 시정 백서 발간 및 특수시책 개발관리 11. 대통령, 도지사, 시장 공약사항 처리 12. 시의회 의정지원 전반 13. 각종 위원회 조정관리 14. 투자신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5. 목표관리제 운영평가 16. 시정종합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7. 역점시책사업의 심사평가 18. 혁신분권에 관한 업무 추진 19. 국제자매결연 업무추진 20. 국제교류업무의 협력지원 21. "참" 제안 조출토론회 및 제안제도 운영 22. 국제통상협력에 관한 사항 23. 외국관련 기념물 및 조형물 관리 24.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25.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감독 26. 예산배정집행 및 절감운영관리 27. 예비비 관리 28. 시 재정 운영 총괄 기획 조정 29. 경영수익사업의 기획 조정 30. 전시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3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구분	분장사무
기획감사실	32. 향토학사 운영관리업무 33.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관리 34. 지방교부세 및 지방 양여금 관리 35. 예산전용, 이월, 이용, 이체 등에 관한 업무 36. 지방재정 조기 집행관리 37. 국·도비 보조금 관리 38. 지방재정 분석 및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 39.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40. 지방채 및 기금운용관리 41. 지방공기업의 육성지도·감독 42. 지방공사, 공단 설립업무에 관한 사항 43.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44.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45. 행정감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6. 상급기관 종합감사 수감 47. 정기 감사에 따른 징계사항 처리 48. 정기 및 수시감사, 결과처리 49. 감사관련 기록 관리 및 통계 분석 50.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51. 특명사항 처리 52. 민원, 진정, 투서 등의 조사처리 53. 민원사무처리상황 검열 54. 상급기관 이첩 및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55. 언론보도사항 조사 및 동향보고 56. 공무원 복무기강 및 자율사정 추진 57. 기동 감찰반 운영 58. 소관사항에 대한 징계의결 및 소청에 관한 사항 59.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결과 처리 60. 부패방지계획 수립 및 시행 61. 선물신고 업무 6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승인 63. 삼척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64. 법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65. 조례규칙제정 및 개폐(안)심사, 공포

구분	분장사무
기획감사실	66. 훈령, 예규(안) 심사 67. 법령, 자치법규 질의해석 지원 68. 법령집, 관보에 관한 사항 69. 소송, 행정심판 사무의 조정 및 통제 70. 고문변호사 운영 71. 공고, 고시 업무에 관한 사항 72. 국가비상사태의 전시법령에 관한 사항 73. 채무불이행자 명부관리 74. 각종 센서스, 통계조사 및 작성 75. 기본통계의 정비 76.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77. 통계 간행물의 발간 78. 기타 통계 및 법제, 소송업무 관련사항 전반 79.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 시행에 관한 사항
문화공보실	1. 지방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지방문화예술단체, 문화원 등록 및 지도 육성 3. 시사편찬 4. 전통사찰 및 향교등 관련업무 5. 전통 제례행사 관련업무 6. 종교 단체 관련업무 7. 문화재의 지정, 해제, 보호구역 조정 및 관리 8. 향토문화의 발굴 육성 9. 문화계 매매입 지도단속 10. 각종문화단체 보조금 관리 11. 매장문화재관리 및 천연기념물 관리 12.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13. 죽서루 운영관리 14. 강원의 얼 선양사업 15. 문화계 지표조사 및 문화계청 소관사무 16. 죽서문화재 관련 업무 17. 전적기념물(탑, 비) 보조관리 18. 지명조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9. 지명위원회 및 지명심의위원회 운영관리 20. 저작권에 관한 사항

구분	분장사무
문화공보실	21. 출판 및 인쇄등록에 관한 사항 22. 공연신고, 공연자, 공연장 등록관리 및 지도감독 23. 음반, 비디오품, 게임등에 관한 업무 24. 도서관 운영관련 예산확보 및 도서구입 25. 도서관 신. 증축에 관한 사항 26. 예술지원 및 행사추진에 관한 사항 27. 기타 문화 예술에 관한 사항 28. 공보행정 종합기획 29. 시보간행 30. 시책에 관한 여론조사 31. 경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사항 32. 공보통계관리 33. 본청 행정방송 및 시청각 기자재 관리 34. 전시 공보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5. 신문, 방송 보도사항의 반응과 분석 36. 시정 종합 보도자료 작성 및 제공 37. 홍보자료 수집 및 발간 38. 홍보매체 이용계획 수립 시행 39. 시정홍보 사진제작 및 배포 40. 방송, 인터뷰 자료 작성 및 배포 41. 영상홍보물 제작 배포 42. TV 난 시청 사업추진 43. 시정 광고 및 선전물 제작관리 44. 기타 공보에 관한 사항 45. 체육행정 종합계획수립추진 46.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47. 전국 및 도 규모 체육행사 유치지원 48. 시체육회 운영지원 49. 핸드볼 실업팀 운영지원 50.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및 운영관리 51.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52. 직장 체육활동 지원 53.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4. 생활체육진흥지원에 관한 사항

구분	분장사무
문화공보실	55. 생활체육 협의회 지원 및 감독 56. 국민건강생활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수립(등산 등 걷전데저스포츠 포함) 57. 기타 체육 및 건강생활에 관한 사항
산업개발과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미래산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수정) 3. 원자력발전소 관련 제반업무 추진 4. 소방방재산업 클러스터 구축 5. 소방방재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6. (재)강원테크노파크 방재산업단 운영·지원 7. 손실보상업무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8. 이주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9. 제반 인.허가 업무 지원 10. 개발업지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소방방재산업단지 분양 촉진 등 마케팅 활성화 12. 실화제시험 연구센터 운영지원 13. 태양광발전 테마파크 추진 14.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유치 15. (재)세계엠텍 관련 사후처리 업무 16. 광대지구 공장부지 관련 업무
에너지산업과	1. 친환경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지원 2. PNG 삼척 터미널 유치사업 3. 종합발전단지 건설사업 관련 보상 등 행정지원 4.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관리 및 집행 5. LNG 건설사업 관련 보상 등 행정지원 6. 호산항 국가관리항 지정 개발 7. 삼척 LNG 및 발전소 주변 연관산업 유치 8. 신발전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수립 및 지원 9. 산업단지 지정 행정절차 이행 및 업무 지원 10. 사업부지 확보 협의 및 이주대책 추진 11. 어업권 보상 생계대책 추진 12. 산업단지내 인허가 업무의 지원

구분	분장사무
관광지역개발과	1.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업무 지원 2. 블랙밸리 컨트리클럽(주) 관련 업무 3. 관광지역개발기금운영 및 집행관리 4. (재)강원랜드 이사회 등 협력업무 추진 5. 관광지역개발사업 중장기 계획수립 및 예산집행관리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사업 추진 6. 하이원 추추파크 지원 7. 비축무연단 기금 운용사업 8. 폐광지역 대체산업육성 9. 플라즈마 석탄가스화 발전소 유치 10. SNG/IGCC생산기지 유치.조정 11. 도계캠퍼스 특례입학 추진 및 특수학교 유치 12.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유리조형 테마파크) 13. 지역연고산업(유리공예) 육성사업 추진 14.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시설관리 15.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16. 육백산 리조트 종합개발사업 17. 심포지구 종합개발사업 18. 도계 진규폐 복지회관 전립-운영 관리
특화산업과	1. 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타운 조성 지원 및 각종 인.허가 사항 2. 종합메디컬 타운 조성 및 치매전문요양시설 건립 3. 기초과학연구원 우주입자연구센터 조성 지원 4. 지역특화산업의 발굴, 육성 및 지원 5. 해상프로웨이 및 해양레포츠 시설 조성 6. 이사부 테마파크 및 해양레포츠단지 조성 7. 요트 면허시험장 운영지원 및 요트시설 종합추진 8. 인재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교육경비 지원 전반 9. 마이스터고 육성지원 10. 도계지구 학교 재구조화 사업지원 11. 삼척고 이전 사업 및 명품고 육성 발전 12.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1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14.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법에 의한 특구 지정

구분	분장사무
자치행정과	1. 국 소관업무의 총괄 조정 2. 각종행사 및 의전 의식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복무관리 4. 시기 관리 5. 보안업무 6. 직장교육 7. 직원 출장 및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 8. 공인관리 9. 각종 공인신조, 개각의 승인 및 관리 10.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업무 11. 공무원 명찰제작 및 관리 12. 청우회 운영 및 구내식당 관리 13. 사무인계 인수 14. 직원활례조화 15. 사정종합일지 기록관리 16.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및 직장에비군중대 운영 17.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전시 자체행동 절차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19. 전시 기관 소산 및 이동에 관한 사항 20. 전시 주민 및 차량통제 관한 사항 21. 문서통제 및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2. 문서접수 분류 및 발송 23. 각종 공문서의 발간통제 24. 편찬문서의 보존관리 25. 발간실 운영 26. 행정사무의 관리개선 27. 사무 자동화 관리 28. 기록문서의 보존관리, 전산화 업무 29. 행정자료실 및 도서관리 30.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31. 정보공개협의회 구성 및 운영 32. 그 밖의 국,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3.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구분	분장사무
자치행정과	34. 읍·면·동 행정 지도 감독 35. 읍·면·동 행정 실적 심사 36. 읍·면·동 공무원의 소집통제 및 읍·면·동장 연가, 병가, 휴가 승인 및 복무관리 37. 통·리·반장에 관한 사항 38. 반상회 운영 및 건의 사업 지원 39. 명예시민에 관한 사항 40. 삼척 향토장학재단 운영 41. 고재민족행정 및 행정서비스 현장제 운영 42. 견문보고제 및 시정아이디어 운영 43. 여론 대화 행정 및 반상회 운영 관리 44. 각종 동향관리 및 지역안정대책 45. 적십자 회비 수납 지원 46. 대민행정 시책 추진 47.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 48. 시장 지시사항 관리 및 기타 시책사업 49. 간부회의 운영 50. 새마을 조직 육성지도 51. 새마을금고 감독에 관한 사항 52.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업무 53. 사회진흥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국민운동분야) 54.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의에 관한 사항 55. 시민의 날 및 도민의 날 운영 56. 이동 시민의 시정 운영 57. 출향인사 삼척사람 운동추진 58. 학생 시정 현장체험 59. 비영리단체에 관한 사항

구분	분장사무
자치행정과	60. 국, 도,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
	61. 도정 상담위원 운영
	6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및 과거사진실규명 신고 및 접수
	63. 사무분장, 전결규칙에 관한 사항
	64.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
	65. 기구 및 직제, 정원관리
	66. 공무원 입면 및 징계
	67. 공무원 현원 관리
	68. 공무원 보수 및 연금에 관한 사항
	69. 공무원 관계증명 발급
	70. 인사·징계위원회 운영
	71.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근무성적 평정)
	72.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허가
	73. 공무원 직무 교육훈련
	74. 전시 지방행정에 관한 사항
	75. 공직자 병력사항 신고 업무
	76.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총괄 관리
	77. 인사행정 시스템 관리
	78. 인사통계 관리
	79. 퇴직자 공로연수 및 퇴임행사에 관한 업무
	80.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81. 공무원 4대보험 업무
	82. 공무원 연금, 학자금, 행정공제회에 관한 업무
	83. 기타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84. 공무원 노조 관련 사항
	85. 단체 교섭; 협약관련 매뉴얼 운영
	86. 직원 후생복지 및 체육, 동호회지원 등에 관한 사항
	87. 공무원 사기 진작 관리.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노사 관련 사항
88. 기록관 시스템 운영	

구분	분장사무
자치행정과	89.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
	90. 정보화 업무추진지도 및 평가
	91. 전산 전문요원 관리 및 교육 훈련
	92. 전산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93. 정보화 상설교육장 관리 운영
	94. 정보화 기기 도입에 관한 사항
	95. 행정정보화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96. 전산기계실 운영 및 관리사항
	97. 전산기기 및 부대장비의 유지 보수
	98. 정보화 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99. 지역정보화 추진위원회 운영관리
	100. 정보화 마을 사업에 관한 사항
	101. 주민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02. 주민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3.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
	104. 지역 정보화 인프라 기반 구축
	105.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06.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관리
	107. 기록관시스템 구축 관리
	108. 기타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9. 행정정보통신 발전 종합계획 수립
	110. 행정정보통신망 종합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111. 행정정보통신 시설 개선 계획 수립 시행
	112.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113. 보안장비 운영 관리
	114. 정보통신기기 도입에 관한 사항
	115. 건축플 정보통신공사의 사전용 검사업무
	116. 행정정보망(LAN) 구축 및 운영 관리
117. 지방행정 정보망 운영관리	
118. 방화벽 시스템 운영관리	
119. 행정전화교환시설 운영 및 관리	

구분	분장사무
자치행정과	120. 행정정보통신 장비,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121. 각종 정보통신회선의 통합관리 122. 정보통신실 운영관리 123. 화상회의실 운영 124. 교관실, 방송실 운영 125. 행정방송시설 유지관리 126. 각종 통신공사 설계,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127. 지진해일 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8. 민방위 경보망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9. 통합경보, 방송통제시스템 운용관리 130. 기타 행정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세무과	1. 지방세관련 조례, 규칙, 제·개정 2. 지방세징 주요시책 추진 3. 지방세관련 위원회 운영관리 4. 세수추계(목표액 설정) 및 심사분석 5. 취득세,등록세,주민세,자동차세,사업소세,담배소비세,주행세,지역개발세 부과(가산금/증가산금 징수결정 포함) 6. 지방세 전산운영관리 및 정보화 추진 7.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관련 업무 추진 8.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관리 9. 지방세제 증명 발급관리 10.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 및 채납계분 11.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추진 12.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및 운영 13. 각종 징수현황보고서 작성관리 14. 결산처분

삼척시 공고 제2014-442호

제17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170회 삼척시의회(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삼척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삼척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삼척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삼척시 삼척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삼척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9.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삼척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